

1. 참전유공자증 ※2021.2.19.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발급 중단

참전유공자증(제5조관련)

(앞 쪽)

(뒤 쪽)

No. 사 진 (3cm × 4cm)	참전유공자증	
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	참 전 구 분	
	참전등록번호	
	년 월 일	
	국가보훈처장 [인]	

85mm×55mm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.

-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보훈(지)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.

2. 국가유공자증 ※ '대상'에 '참전유공자' 표시 확인 후 감면 적용

(앞쪽)

(뒤쪽)

국가유공자증
(The National Honoree)

성 명: _____

주민등록번호: _____

사 진

대 상: _____

보 훈 번 호: _____

발행일 년 월 일

등록일 년 월 일

국가보훈처장

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.

▶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·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배우자,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)

시설 이용 대상

- 고궁, 농원, 공원, 박물관, 미술관, 수목원, 휴양림, 독립·전쟁기념관(무료)
- 공연장, 체육시설(50%)

▶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.
▶ 보훈상담센터 : 1577-0606

85mm × 55mm(PET-G카드)

3.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 확인서

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2서식]

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 확인서

발급번호			
확인대상자 (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)	대상구분	참전등록번호(보훈번호)	
	성명	참전구분	
	주소		
신청인	확인대상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	
용도 및 제 출처 (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)	용도	제출처	

위 확인대상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
직인

유의사항

- ※ 이 확인서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※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확인

우	주소	전화번호	모사전송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
			전자우편주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4. 병역명문가증

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[별표 2]

병역명문가증

(앞면)

병역명문가증	
사 진 28mm×36mm	성 명 : 홍길동
	생년월일 : 0000. 00. 00.
	인증번호 : 0000 - 000
	년 월 일
	 병무청장 인

(뒷면)

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	
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	
■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 소개, 우대 시설 안내 등	
*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으로 접속 (https://www.mma.go.kr/hall/index.do)	
병역명문가 모바일 앱	
■ 모바일 병역명문가증 발급, 우대 시설 지도 검색 등	
* 휴대폰에서 “병무청”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	
	
병무민원상담(전국어디서나) 1588-9090	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	